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4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타 업종으로 이탈, 신규 종사자 유입 저조 등 택시기사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저하되며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영난 가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경감할 수 있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택시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수 기준 완화) 지역별 최소 기준 대수를 서울·부산 50대 → 30대,

광역시·시(市) 30대 → 20대, 군(郡) 10대 → 5대로 완화(별표2 제1호 라목)

나. (차고지 면적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 등록률(77%) 및 차고지 밖 밤샘

주차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의 경감 허용 범위를 40% → 50%로 확대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je41711@korea.kr
- 팩스번호 : 044-201-3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